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5706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1. 3. 29.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279,554,5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9,554,585원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김민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화성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아파트

1층 668.4563㎡	11층 650.1173㎡
2층 650.1173㎡	12층 650.1173㎡
3층 650.1173㎡	13층 650.1173㎡
4층 650.1173㎡	14층 650.1173㎡
5층 650.1173㎡	15층 650.1173㎡
6층 650.1173㎡	16층 650.1173㎡
7층 650.1173㎡	17층 650.1173㎡
8층 650.1173㎡	18층 650.1173㎡
9층 650.1173㎡	19층 432.1115㎡
10층 650.1173㎡	20층 432.11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경기도 화성시

대 4367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25.477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43670분의 82.3654

끝.

청 구 원 인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합니다)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각 참조).

【표1】 여신거래내용

(단위 : 원)

여신과목/계좌번호	여신금액	여신신규일	여신만기일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계좌번호 1)	290,000,000	2020. 3. 13.	2023. 9. 13.	C (319,000,000)

한편 소외 D는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는 소외 D와 소외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전129322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5. 25.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2022. 7. 7., 2022. 6. 14. 각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따라서 이자계산기준일인 2022. 9. 30. 기준 소외 D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의 5 참조).

【표2】 원고의 피보전채권

(단위 : 원)

여신과목	미회수 원금	원입전 (연체)이자	발생 연체이자	합 계	근보증 한도액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계좌번호 1)	241,666,670	13,253,808	12,001,233	266,921,709	319,000,000

결국 소외 C 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한도 내에서 266,921,709원 및 이 중 241,666,67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2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5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가. 소외 C 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채무자가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마치기로 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등 참조).

소외 C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1. 3. 29. 배우자로 추정되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소유 명의를 본인이 아닌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7. 16. 접수 제1538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갑 제3호증 참조),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소외 C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

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소외 C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소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

정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위와 자금출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예외적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종료되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산정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채권액에 포함됩니다.

한편, 이 사건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319,000,000원 한도 내에서 266,921,709원 및 이 중 241,666,670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9.5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표 2021. 10.경 동 전용면적(125.4779㎡)의 4층이 74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740,000,000원입니다(갑 제4호증 참조).

그렇다면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액배상의 기준금액이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319,000,000원 한도 내에서 266,921,709원 및 이

중 241,666,670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9.5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 원고는 '31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66,921,709원 및 그 중 241,666,670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9.5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므로 판결 선고일인 2023. 4. 18.까지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취소한다.